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2. 11.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이미 검증되어 영농 활동자료를 통하여 감축량 산정이 가능한 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축한 경우에만 그 실적을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인증 절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감축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기준가격을 국내 배출권 거래가격과 연계하여 매년 조정된 단가를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것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아닌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47조의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7조의3제1항 중 “추가적인 활동을 통하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받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감축실적에 대하여”를 “농업경영체에게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및 감축 실적 인증 등에 드는 비용과 감축 실적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등록·관리·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47조의3(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존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 등 추가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감축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이하 “감축실적”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의3(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등) 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

		② -----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고시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와 그 이행실적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
터 인증을 받아야 한
다.

③ 정부는 감축실
적에 대하여 인센티
브를 지원할 수 있으
며, 정부가 인센티브
를 지원한 감축실적은
정부에 귀속된다. 이
경우 정부가 인센티
브를 지원하는 기준
가격은 국내 배출권
거래가격, 당해 연도
감축실적 총량 및 예
산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감축실
적의 등록 신청, 등록·
관리, 인증, 정부 인센
티브 지원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농업경영체에
게 온실가스 감축 계
획 수립 및 감축 실
적 인증 등에 드는
비용과 감축 실적에
대한-----귀속된다.<후
단 삭제>

④ -----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고시

	<u><신 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이후 온실가스 감 축실적의 등록을 신 청한 경우부터 적용 한다.	로-----. 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4항에 따 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등록·관 리·인증 및 인센 티브 지원 등의 업 무를 「농촌진흥 법」 제33조에 따 라 설립된 한국농 업기술진흥원에 위 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 안과 같음) 제2조(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개정안과 같 음)
--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70
----------	-------

발의연월일 : 2021. 9. 2.

발 의 자 : 이원택·양경숙·백혜련
이규민·최종윤·한병도
장경태·최인호·홍정민
신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2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수립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농업부문 감축목표인 160만톤을 달성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 확대를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을 추진하고 있음.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온실가스의 감축을 유도하려는 사업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온실가스 감축량 1톤당 1만원으로 배출권거래시장 가격인 1톤당 2만원('21년 5월 기준)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이끌어내기 어

려운 수준임.

이에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등에 배출권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3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이미 검증되어 영농 활동자료를 통하여 감축량 산정이 가능한 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축한 경우에만 그 실적을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인증 절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감축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기준가격을 국내 배출권 거래가격과 연계하여 매년 조정된 단가를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것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아닌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47조의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6절에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농업경영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존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감축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이하 “감축실적”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사업계획서와 그 이행실적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정부는 농업경영체에게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및 감축 실적 인증 등에 드는 비용과 감축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한 감축실적은 정부에 귀속된다.

④ 그 밖에 감축실적의 등록 신청, 등록·관리, 인증, 정부 인센티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이 고시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등록·관리·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7조의3(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존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감축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이하 “감축실적”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사업계획서와 그 이행실적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u> <u>③ 정부는 농업경영체에게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및 감축 실적 인증 등에 드는 비용</u>

과 감축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한 감축실적은 정부에 귀속된다.

④ 그 밖에 감축실적의 등록 신청, 등록·관리, 인증, 정부 인센티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등록·관리·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